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'지방보조금의 관리'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, 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, 보조사업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보조대상 사업 규정(안 제4조)

-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(안 제5조)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
-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름.
-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.

○ 성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, 제7조)

- 설 치 : 위원장(1), 부위원장(1) 포함 15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- 구 성
 - 위원장(1) : 민간위원 중 호선
 - 위　원 :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,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.

- 기 능
 -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
 -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 -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심의
 -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심의
 -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

○ 보조사업 성과평가(안 제25조)

-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
-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
 -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
-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
 - 예산 미편성 또는 전년도 보다 감하여 편성

○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(안 제28조)

-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, 성과 평가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

4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

나. 기타

1) 예산조치 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,360천원 정도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.

4) 입법예고(2014. 11. 12 ~ 2014. 12. 1)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

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

❍ 본 조례 검토결과

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지방보조금의 사업교부 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, 보조사업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

❍ 특히,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강화와 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보조금 내역의 공시로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